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- 1157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(재)지정 공고하고,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-2557, 2025-903호 일부를 조정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0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□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

○ 주요 재건축 단지 등

- 지정기간: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4,578,039	당초(제2024-1236호)
서울특별시	강남구	압구정동	1,149,476	압구정 아파트지구
	영등포구	여의도동	616,034	여의도 아파트지구
	양천구	목동, 신정동	2,282,130	목동 택지개발지구
	성동구	성수동1가, 성수동2가	530,399	성수 전략정비구역 (1~4구역)

□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○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

- 지정기간: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89,242.86	
서울특별시	종로구	숭인동 61 일대	17,334.1	지목 「도로」 한정
	서대문구	홍은동 11-360 일대	11,665.0	
	성북구	정릉동 199-1 일대	34,563.76	
	마포구	창전동 46-1 일대	11,505.0	
	강북구	미아동 791-1134 일대	14,175.0	

※ 허가대상 도로는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으로 함.

□ 허가구역 조정지역

○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
- 지정기간: 변동없음

대상지역			면적(㎡)		비 고
			기정	변경	
서울 특별시	광진구	자양동 681 일대	74,895.6	42,045.5	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(당초 제2024-2557호)
	노원구	월계동 534 일대	587,598.0	135,950.0	
	관악구	신림동 650 일대	92,041.0	103,912.0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(당초 제2025-903호)

□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재지정, 지정, 조정 공통사항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□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

○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

- 해제일자: 2025년 4월 10일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서울특별시	광진구	자양동 12-10 일대	75,608.0	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(당초 제2024-2557호)

□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붙임1 참조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

□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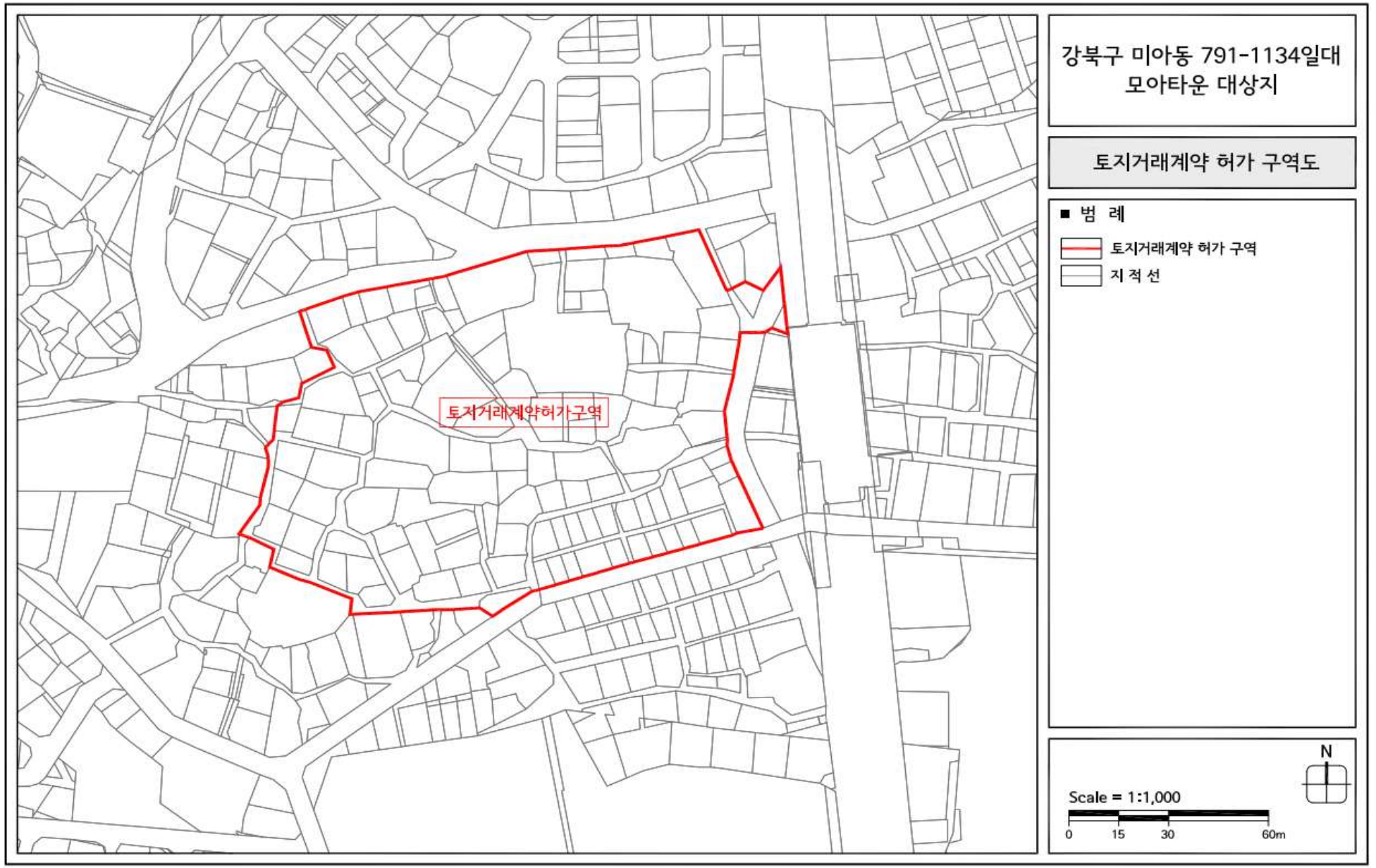
◎ 강북구 미아동 791-1134 일대